

제품안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휴대폰 및 모뎀용 어댑터에 사용되는 PCB는 수입 시점에서 전기적 기능수행이 불가한 단순보드 조립품인데 이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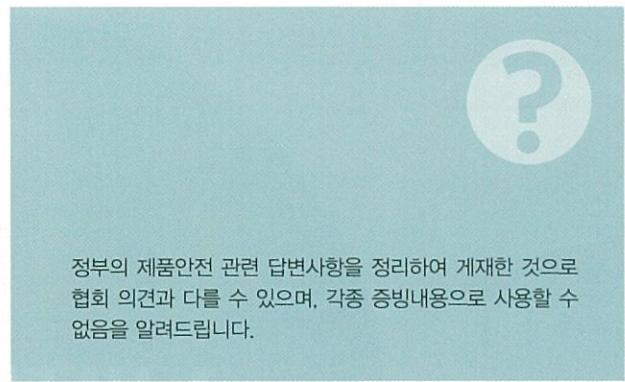
A PCB Assy(전원플러그, 케이스, 전선 등이 조립되어 있지 않은 PCB 상태로만 수입하여 국내에서 최종 완성조립을 하기 위한 구조)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나, 국내에서 최종 조립 후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Q 가정용 로봇 청소기를 수입할 예정인데, 어댑터는 AC 120V(미국내수) – UL마크 본체충전식이고 어댑터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별도 트랜스를 이용하는 제품입니다. 트랜스를 제외한 본체 및 어댑터를 수입할 경우, 국내에서 안전관리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청소기의 인증 없이, 인증 받은 트랜스만 사용할 수는 없는 건지? 또한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제품(1대)은 판매목적이 아닌데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A DC용 로봇청소기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동 로봇청소기에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전기충전기'와 동 전기 충전기에 교류전원을 공급하는 '트랜스'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 청소기 1대를 개인사용 목적으로 외국에서 본인이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판매용이 아니므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Q 기존에 국내에서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은 전동공구(햄머드릴)의 사용전원 주파수를 50Hz로 변경 표기하여 판매해도 되나요?

A 정격주파수 60Hz로 설계 및 제조되어 안전인증을 받은 전동공구(햄머드릴)는 60Hz 전원조건에서 해당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성 검증시험을 받은 제품이므로 반드시 60Hz로 표시하여야 하며, 동 표시사항(정격 주파수)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한 표준전압(110/220/380V) 및 주파수(60Hz)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품안전 관련 답변사항을 정리하여 게재한 것으로
협회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각종 증빙내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당사는 간판조명, 가로등과 같이 특정한 시간에, 점등 및 소등이 필요한 장치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디지털타이머를 제조하는데 해당 제품이 전기용품 세부범위의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디지털타이머는 고정 전기설비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스위치로 안전인증 대상인 전자회로에 의한 ON/OFF 기능을 가진 스위치에 해당되며, 적용 안전기준은 K60669-1 / K60669-2-1입니다. 한편,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인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는 사용자가 사용 시간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스위치로 OFF기능만 있는 스위치며, 적용 안전기준은 K60730-1 및 K60730-2-7입니다.

Q 스티커가 완구로 분류되면 혹시 스템프패드도 해당되어 KC마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중 '완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동 제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해야 하며 자율안전확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제품에 KC마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Q 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사항의 제조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제조는 '생산 · 조립 · 가공'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생산 · 조립 · 가공' 하는 자를 제조자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주생산의 경우 제품의 제조를 의뢰한 자가 ①해당제품을 기획설계하고 ②시방서, 사양서를 OEM 업체에 제공하고, ③원부자재를 직접관리하고, ④제품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의뢰자를 '제조자'로 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